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8월 26일(이범윤의원 외 7명)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8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9월 6일(제1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이범윤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'05년 7월 22일 환경부령 제79호에 의거 「환경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」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”로 하고
- 제3조제1항중 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”을 “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」”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 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실)

- 금번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”을 “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 규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</u></p> 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검사, 시험등의 수수료는 “식품의약품안전청 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 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”와 <u>“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”</u>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,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<u>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</u></p> <p>제3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“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”</u>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보건환경연구원법

제8조 (수수료 등) ①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
②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18953호, '05.7.22)

제2조 (소속기관) ①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을 둔다.

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(대통령령 제18953호, '05.7.22)

부칙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” 을 “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” 으로 한다.